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페이지
1.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

(2013. 10. 2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검토보고]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 안 건 명

-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3년 10월 11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5일
- 의안번호 : 13-78

3. 안 제출이유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4. 사업 주요내용

- 공유재산 교환 : 3필지
 - 사유 :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를 위한 교환

○ 교환대상 재산 현황

소유	지번	구분	면적(㎡)	공시지가(원)	가액(원)
계	3필지		374		2,256,600,000
마포구	마포구 대흥동 298-4 (대흥2파출소)	대지	66	5,080,000	335,280,000
	마포구 도화동 6-69 (도화파출소)	대지	194	8,370,000	1,623,780,000
	마포구 신수동 297 (신수파출소)	대지	114	2,610,000	297,540,000
계	2필지		765.1		2,256,394,000
기획재정부	마포구 성산동 145-18 (성산어린이집)	임야	625.9	2,860,000	1,790,074,000
	마포구 합정동 369-12 (환경미화원휴게실)	대지	139.2	3,350,000	466,320,000

[검토의견]

- 동 변경계획안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를 위해 2011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 등 상호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시·도간 MOU체결에 따라 마포구 소유 3필지와,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를 교환하여,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함에 따라 야기되었던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상의 제약 등의 문제점들을 상호교환을 통해 재산권을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개발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요청하여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다만 기획재정부가 소관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2013.4.15자로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지자체의 국유 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파악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